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재직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명시〉

■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90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재직기관으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명시(안 제31조제3항)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8. 1.
3. 회부연월일 : 2024. 8.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 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수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재직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명시(안 제3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수임제한) ①·② (생략)	제31조(수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u>금융위원회</u> , <u>공정거래위원회</u> , <u>경찰관서</u>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	③ ----- ----- ----- ----- ----- ----- ----- -----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 <u>금융위원회</u> ----- ----- ----- ----- ----- ----- -----

현행	개정안
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개업을 한 자에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수임을 그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제한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다만,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인·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근무한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수임제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수임제한은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어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재판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수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현행법은 수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재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¹⁾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해당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²⁾ 현행법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미 수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³⁾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④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문 의 처

02) 6788-5060
